

모든 직장이나 근무 현장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십시오. 위반 시 처벌 대상입니다.



### 공식 공지



# 로스앤젤레스 최저임금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임금

# 시간당 17.87달러

모든 고용주는 로스앤젤레스 최저임금 조례에 따라 직원에게 새로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로스앤젤레스 최저임금 조례 제187.02절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발효일:	모든 고용주:
2022년 7월 1일	\$16.04
2023년 7월 1일	\$16.78
2024년 7월 1일	\$17.28
<b>2025년 7월 1일</b>	<b>\$17.87</b>

로스앤젤레스의 고용주는 모든 지방, 주 및 연방의 최저임금법과 노동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시 임금기준국(Office of Wage Standards) 조례에 따라 임금기준국의 계약 관리 부서(Bureau of Contract Administration)에서 위반 가능성 조사, 근무 현장 조사, 직원 면담, 급여 기록 검토 등을 실시할 권한이 부여됩니다. 임금기준국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위반 사항에 대해 시의 최저 임금 조례를 집행합니다. 1) 로스앤젤레스시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공지, 게시 및 급여 기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보복. 로스앤젤레스시 법(LAMC) 188.04절은 로스앤젤레스시의 최저 임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직원이 차별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로스앤젤레스시 유급 병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

모든 고용주는 로스앤젤레스시 최저 임금 조례에 따라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급 병가는 로스앤젤레스시에서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특정 주간에 2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내에 30일 이상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제공됩니다.

병가 부여	
사전 제공 방식	매 고용 연도, 역년 또는 12개월의 시작 시 최소 48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는
적립 방식	(30)시간 근무 시마다 (1)시간의 유급 병가가 제공됩니다.
72시간 제한	누적된 미사용 유급 병가는 다음 고용 연도로 이월되며 최소 72시간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고용주는 상한선을 정하지 않거나 더 높은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과의 분리	퇴사 시 고용주는 적립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은 병가에 대해 직원에게 보상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복구	직원이 퇴사 후 1년 이내에 재고용되는 경우 이전에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은 유급 병가는 복구됩니다.

사용 설명	
시기	직원은 근무 90일째부터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식	고용주는 직원 본인, 가족 또는 혈연 또는 인척 관계에 있는 개인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적정한 시간 사용은 LAMC 187.04(G)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급 병가 사용은 연간 48시간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 법 187.06절은 로스앤젤레스시의 유급 병가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직원이 차별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44-WAGESLA(924-3752)로 전화하거나 [wagesla@lacity.org](mailto:wagesla@lacity.org)로 이메일을 보내 임금기준국에 문의하거나, <http://wagesla.lacity.gov/>을 참조하십시오.

로스앤젤레스시는 미국 장애인법 제2조에 따른 적용 대상 기관으로서 장애를 사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요청 시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합당한 편의 조정을 제공할 것입니다.